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8.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1월 20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9. 12. 3)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제안이유

-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통장 1인에 1자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자녀로 변경(안 제3조)
-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
 -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3조, 제9조 중)
 - “매 학년마다” 를 “학년마다”로 (제4조 중)
 -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제5조 중)
 -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를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로(제8조 중)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돌파함으로써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맞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준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1 호
----------	---------

제출연월일 : 2009.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통장 1인에 1자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자녀로 변경함.
- 나.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용어를 어문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 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15 ~ 11. 4)결과 : 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고”를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매학년마다”를 “학년마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한다.

제8조 중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를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②제1항 각호의 <u>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u>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 <u>자격요건을 갖춘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u> ----- ----- ----- -----.</p>
<p>제4조(추천) 장학생은 <u>매학년마다</u>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p>	<p>제4조(추천) ----- <u>학년마다</u> ----- -----.</p>
<p>제5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p> <p>1. <u>상훈법</u>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p> <p>2 ~ 4. (생략)</p>	<p>제5조(선발) ① ----- ----- ----- -----.</p> <p>1. <u>「상훈법」</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으로 학기별로 <u>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u>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p>	<p>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 ----- <u>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u> ----- -----.</p>
<p>제9조(지급정지) ①장학생에게 선발된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제9조(지급정지)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 5. (현행과 같음)</p>